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2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주호영·김승수·김예지

이헌승 · 장동혁 · 고동진

김소희 • 박준태 • 권영세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, 철도 역시설, 환승시설, 여객자동차터미널, 항만 대합실 및 공항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

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지점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시설
 - 가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)
 - 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 설(물류시설·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)
 - 다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 - 라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 미널
 - 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
 - 바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하의

도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⁸	행 행	개 정 안
제11조(옥외집회와	시위의 금지	제11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
장소) (생 략)		장소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
		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
		계 지점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
		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
		<u>아니 된다.</u>
	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		<u>해당하는 대중교통시설</u>
		<u>가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</u>
		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
		중 역사(출입통로·대합 <u>실</u>
		<u>·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</u>
		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
		<u>다)</u>
		나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
		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
		설 중 역시설(물류시설・
		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
		을 포함한다)
		다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
		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

설
라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
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
여객자동차터미널
마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
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
바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
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
객터미널
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도로 중 편도 3차로
이하의 도로